

울산광역시육아종합지원센터 비상근 인력 모집 공고

울산광역시에서 설립·지원하고 울산대학교에서 위탁 운영 중인 「울산광역시육아종합지원센터」에서는 다음과 같이 직원을 모집하고자 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.

2024. 12. 23.

울산광역시육아종합지원센터장

1 모집 분야 및 지원 자격

모집분야	인원	주요 업무	지원 자격
비상근 특수교사	○명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관내 장애아통합보육 어린이집 현장방문 지원 정서·행동문제 영유아 상담 및 지도, 부모양육 상담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초·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에 의한 교사 자격 기준 중 특수학교 정교사 1급 및 2급, 준교사 자격증을 취득한 자로서 보육관련 업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초·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에 의한 교사자격 기준 중 치료교육 과목의 특수학교 실기교사 자격증을 취득한 자로서 보육관련 업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대학(전문대학 및 대학원 포함)에서 특수교육 또는 재활관련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자로서 어린이집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
비상근 상담사·검사자·치료사	○명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부모상담 영유아 발달 및 심리검사 감각통합치료, 언어치료, 놀이치료 관내 장애아통합보육 어린이집 현장방문 지원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해당 자격 소지자(심리상담사, 임상심리사, 작업치료사, 언어재활사, 놀이치료사 등) 상담·심리 분야의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해당 업무와 관련하여 3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※ 경력인정 범위: 병원, 대학 등 학교, 상담센터 및 심리연구소, 복지시설 등에서 3년 이상 근무하며 심리상담, 검사, 치료 등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※ 우대사항: 영유아 및 부모 대상 상담·검사·치료 경력자, 보육경력자 우대

※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

※ 다음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(「영유아보육법」 제20조)는 선정될 수 없음

1. 「영유아보육법」 제16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

- 미성년자·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
- 「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3조제1호의 정신질환자
- 「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의 마약류에 중독된 자
-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
-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(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(「아동복지법」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20년)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
-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. 다만, 「아동복지법」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「영유아보육법」 제45조에 따라 어린이집의 폐쇄명령을 받고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또는 「유아교육법」 제32조에 따라 폐쇄명령을 받고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
- 「영유아보육법」 제5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또는 「아동복지법」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「영유아보육법」 제23조의3에 따른 교육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

2. 「영유아보육법」 제46조나 제47조에 따라 자격정지 중인 자

3. 「영유아보육법」 제48조제1항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후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자격 재교부 기한 2년(제48조제1항 제3호에 따라 취소된 경우는 10년)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

2

전형방법 및 합격자 발표

전형구분	전형일정	비고
모집공고 및 서류접수	• 2024. 12. 23.(월)~2025. 1. 7.(화)	- 2025. 1. 7.(화) 12:00 마감
서류전형 합격자 발표	• 2025. 1. 7.(화) 17:00 이후	- 개별통보 -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전형 일시 및 장소 통보
면접전형	• 2025. 1. 10.(금) 17:00~18:00	- 구술면접
면접전형 합격자 발표	• 면접 익일 17:00 이후	- 개별연락

※ 전형일정은 내부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

3

제출서류

- ① 지원서 1부(연락처 필수 기재) <첨부 1>
- ② 자기소개서 1부(A4 2장 이내) <첨부 2>
- ③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동의서 1부 <첨부 3>
- ④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
- ⑤ 최종학교 성적증명서 1부
- ⑥ 자격증 사본 1부(해당자에 한함)
- ⑦ 경력증명서(관련 증빙서류 포함) 1부
(해당자에 한함)

※ ①, ②, ③ 첨부된 양식 활용하여 제출

4

서류접수 기간 및 접수처

- (접수기간) **2024. 12. 23.(월)~2025. 1. 7.(화) 12:00**
(평일 9:00~18:00/주말 및 공휴일, 점심시간(12:00~13:00) 제외)
- (접수방법) 방문, 우편 접수(접수는 마감일시 도착 분까지 유효)
 - ① 방문 및 우편 접수: (44035) 울산광역시 동구 바드래1길 61(전하동) 울산광역시육아종합지원센터
 - ② 문의처: 울산광역시육아종합지원센터 ☎ (052) 266-4174 (담당자: 상담지원팀장 이정희)

5

보수기준 및 근로조건

구분	비상근 특수교사, 상담사·검사자·치료사
보수기준	• 수당: 센터 자체 기준 • 사회보험: 고용보험, 산재보험(비상근 치료사 적용)
근무시간	• 주 1~2회 ※ 근무시간 협의 가능
경력인정	-
근무장소	• 울산광역시 동구 바드래1길 61(전하동)
근무개시일 (계약기간)	• 2025. 2월 중 근무 예정(계약기간: 2025. 2월 중~12. 31.) ※ 근무 시작 시기 협의 가능
복리후생	• 근로기준법 준용

- 제출서류는 공고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한 서류만 접수 가능하며, 허위 기재 시 선정이 취소됩니다.
- 제출한 서류는 「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 제11조에 의거 선정여부 확정일 이후 14일 까지 서류(전자서류 제외)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. 선정서류 반환을 원할 시 서류 반환청구서 <첨부 4>를 작성하여 제출해주시기 바라며, 청구기간에 지원자의 반환 청구가 없을 경우, 해당 서류는 파기됩니다(청구기간: 2025. 1. 7.~1. 21.).
- 고의 또는 과실로 모집 비리 등 중대한 사고를 발생시킨 경우 및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 되었음이 인정될 때에는 직권면직 될 수 있습니다.
- 구비서류 미제출, 연락두절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.
- 응시인원이 모집인원과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- 근무 후 1개월 수습기간을 거쳐 업무수행 등의 전반적인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모집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.
- 심사와 관련된 평가내용 등 관련 모든 자료는 비공개로 합니다.
- 선정이 결정된다 하더라도 추후 결격사유 및 신체검사 결과 등으로 선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.
- 본 공고는 내부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,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후 시행 예정입니다.